

자활근로사업 소개



참여기간

자활참여자의 자활촉진 및 자활근로 안주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60개월로 제한

사업유형

구분	사업	매출기준
시장진입형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 창업이 용이한 사업	매출이 총 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해야 함
사회서비스형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추진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사회복지 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로하는 취업 유도형 사업	해당없음
근로유지형	연령, 건강 등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일자리에 참여하며 상위 사업 참여 준비	

자활급여 (자활근로인건비 2023년 기준)

사업단 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자활근로
급여(월)	표준소득액(월) 1,499,940원	표준소득액(월) 1,300,000원	표준소득액(월) 719,420원	표준소득액(월) 750,100원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1일 4시간, 주 5일

전국 자활 지원 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35 총정빌딩 9층	02-3415-6900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 양천구 공향대로 630 어바니엘 305호	02-318-4140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7길 1	051-868-5866~7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6층	053-359-3730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4층(간석동 26-3)	032-437-4051~4
광주광역자활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3층	062-361-9114
대전광역자활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10 대제빌딩 5층	042-257-1979
울산광역자활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2, 2층 (신정동 588-1)	052-268-0770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72 세지빌딩 5층	031-267-0140
강원광역자활센터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45 세우리빌딩 2층	033-244-0290-1
충북광역자활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16, 세종빌딩 2층	043-298-9112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23, A동 5층	041-415-2006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063-226-0388
전남광역자활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6층	061-284-4680
경북광역자활센터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1, 5층	054-858-8077
경남광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3층	055-602-1621~7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11 (노형동)	064-711-1919
한국자활연수원	충북 충주시 안심1길 143	043-841-3700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주세요.



자활사업 안내



자활기업 지원 내용

자활 기업 소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인정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원요건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사회적 자활기업의 경우 전체 구성원 5명 이상, 취약계층 30%이상, 설립후 3년 경과, 법인인 경우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업 창업지원 자활기업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인증(HACCP 등)지원 등 품질강화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모델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자활기업선정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신설) 전국자활기업 신규조직 출범

구분	지원내용	개발원	지자체
창업지원	창업자금 지원	○	
	전세점포 임대	○	○
활성화 지원금	경영관리지원사업 (마케팅, 법인전환 등 컨설팅 지원)	○	○
	국가공인인증지원	○	
	생산물 품질개선비 지원	○	
	온·오프라인 입점지원	○	
	규모화 및 협업지원	○	
	전문인력 지원	○	○
	사업개발비 지원	○	
	전국·광역자활기업 사업비	○	○
	우수자활기업 지원	○	
	사업자금 이차보전, 대출	○	○
	기계설비, 시설보강	○	○
	신용보증료 지원	○	
	우수자활생산물 인증	○	
자활생산물 우선구매	○	○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지원	○	
기타	국·공유 우선임대		○
	4대보험 기업부담금 지원		○

자활 사업이란?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제공과 복지-금융-고용 상담서비스, 향후 중·장기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참여 대상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지역자활센터 (전국 250개소) 방문

자활사업 프로그램

- 자활근로사업**
 - 참여자 기초역량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 개선을 기반으로 맞춤형 일자리 참여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자활기업 창업 또는 취업 가능하도록 지원
- 자산형성**
 - 자립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제공
 - *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직업훈련**
 - 도배장판, 바리스타 등 전문기술 교육, 자활기업 창업교육 등 탈빈곤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자활 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별 구체적인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최대 적립금 : 1,440만원(본인적금 포함) + 이자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최대 적립금 : 720만원(본인적금 포함)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1 :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 발생
최대 적립금 : 1,440만원(본인적금 포함) + 이자

지원대상2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최대 적립금 : 720만원(본인적금 포함)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통장별 공통·중복 적용)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성실참여자 월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성실참여자 최대 월 15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가구의 청년 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탈수급 시 72만원)



*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